제 1쇄

뉴사우스웨일즈 (NSW)

사적 이미지에 관한 범죄 수정 법안 2017

b2016-120.d21

주석

이 설명문은 의회에 제안된 그대로의 법안에 관련한다.

요약

이 법안은 범죄 법안 1900 을 수정해 리벤지 포르노로 흔히 알려진, 행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적 이미지의 유포를 처벌하는 데 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 법안은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사적 이미지를 기록, 유포하거나 기록, 유포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위법 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자 에게는 최대3년의 징역형, 100페널티 유닛, 혹은 둘 모두를 구형 한다

이 법안은 2016년 3월 발간된 입법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 “NSW에서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개선 방안” 에 대한 정부 대응의 일부 이다.

[규정의 윤곽]

제 1절은 제안된 법안과 그 부제를 명명한다

제2절은 공표에 따라 제안된 법안의 시행 일자를 제공한다.

스케쥴1: 범죄 법안 1900 no.40 의 수정

스케쥴1[2]는 범죄법안 1900의 제3부에 발의된 부문 15C를 추가한다.

발의된 섹션 91N은 상위 부문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표현들을 정의한다. ***사적 이미지***는 ‘ 합리적인 개인이 사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사적 부위 또는 개인이 사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이미지’를 뜻하며 합리적 개인이 합리적으로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사적 부위 또는 개인이 사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조작, 변형된 이미지를 포함 한다.

(\*원본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사적 부위*** 는 나체의 유무와 무관하게 개인의 (1)생식기 부근,(2)항문 부근,(3)생물학적 여성,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또는 스스로 여성으로 정체화 하는 이들의 가슴을 포함한다.

발의된 섹션91O는 명시된 범죄들에서의 ‘동의’의 정의를 제공한다

발의된 섹션91P 는 타인이 촬영/기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혹은 동의 유무에 개의치 않고 동의를 받지 아니한 타인의 사적 이미지의 의도적 기록을 범죄로 분류한다.

발의된 섹션91Q 는 타인이 사적 이미지의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혹은 동의 유무에 개의치 않고 동의를 받지 아니한 타인의 사적 이미지의 유포를 범죄로 분류한다.

발의된 섹션91R 은 동의 받지 않은 타인의 사적 이미지를 촬영 또는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타인에게 협박이 이행 될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를 범죄로 분류한다.

각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은 3년의 징역 혹은 100패널티 유닛, 혹은 둘 모두 이다. 16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소추는 그 유형을 막론하고 공개 소추 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의된 섹션91S는 법원이 섹션91P 또는 91Q를 위반해 유죄로 판명된 사람에게 관계된 이미지의 삭제조치를 요구 할 수 있게 하며 법원의 해당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이에게는 최대2년의 징역형, 50패널티 유닛 혹은 둘 모두를 부과할 수 있다.

발의된 섹션91T는 범죄에 대한 예외조항을 포함하는데 이 예외조항에는 의학적, 과학적 목적으로 진행된 행위, 법 집행을 위한 행위 등 합리적인 사람이 납득 가능 한 행위들을 포함한다.

스케쥴 1[3] 은 동의 받지 않은 사적 이미지의 의도적 기록/ 유포를 범죄 법령1900의 11A항목에 따라 *특정 의도를 띈 범죄행위*로 분류함을 명확히 한다.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상태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범죄의 의도 유무를 판단 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도 있음 뜻하며 이는 범죄 법령1900의 428B 항목에서 서술 된 바 와 같이 *특정 의도를 띈 범죄 행위*에서의 일반적 법칙과 맥락을 같이한다.

스케쥴1[1] 은 발의된 부문에서 사용되는 정의와의 일관성을 위해

관음에 관한 범죄에서의 사적 부위에 대한 정의를 정정한다.

스케쥴2 기존 법안의 수정

스케쥴2.1은 아동보호법령 (아동과 함께 일하기) 2012를 개정해 성인일 당시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상기 발의된 범죄 법안1900섹션 91P,91Q, 혹은 91R을 위반한 자 의 위험 평가를 요구하도록 한다.

스케쥴2.2 는 범죄 법안 2007 (가정과 개인적 폭력) 을 개정해 새로이 발의된 범죄 법안1900섹션 91P,91Q, 혹은 91R의 위반을 개인적 범죄행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스케쥴2.3은 범죄 과정 법안 1986을 개정해 새로이 발의된 범죄 법안1900섹션 91P,91Q, 혹은 91R의 위반을 도표2에 명시된 기소 가능 한 범죄로 구분 한다. 이는 검사의 기소가 없을 경우 상기 명시된 범죄들의 약식 기소를 가능케 하며 이러한 새로운 위법행위를 다룸에 있어 지역 법원은 최대 50패널티유닛을 부과 할 수 있다.

목표: 사적 이미지에 관한 범죄 수정 법안 2017 은 범죄 법안 1900을 개정해 행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적 이미지의 기록과 유포에 관한 금지법안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기타 목적 포함)

NSW 입법부는 다음을 제정한다 :

1. 법안의 명명 : 법안의 명명은 사적 이미지에 관한 범죄 수정 법안 2017로 한다.
2. 법안의 안내: 본 법안은 차후 공표될 공표일 당일 혹은 이후부터 유효하다.